

# 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71,398,646	47,141,959
일반회계	1,288,520,192	38,655,606
특별회계	282,878,454	8,486,354
공기업특별회계	204,048,245	6,121,44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7,670,238	2,630,10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65,670	46,97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4,812,337	3,444,370
기타특별회계	78,830,209	2,364,906
주택사업특별회계	103,588	3,108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9,764,089	592,923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30,115	3,903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5,201,525	156,046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0,120,154	903,605
지하수특별회계	3,186,505	95,59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291,168	68,73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12,950	42,389
수질개선특별회계	16,214,057	486,422
기반시설특별회계	406,058	12,18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013,14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200,000천원으로 한다.